

【논문】

배려와 자율*

한 평 수

【주제분류】 윤리학, 여성주의

【주요어】 자율, 자유, 여성주의, 배려

【요약문】 자율(autonomy)은 오늘날 대체로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나쁘지 않은 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서구 철학사 속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형성된 말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율을 옹호해야만 할 가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자율의 개념을 폐기하거나 덜 중시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특히 여성주의 그 중에서도 배려 윤리(care ethics)와 관련해서 나왔다. 그런데 몇몇 논자들은 ‘배려 윤리에도 자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율은 배려 윤리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규제함’¹⁾이란 일상적 의미를 갖는 자율은 대체로 누구에게나 좋은 말, 최소한 나쁘지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이 말의 반대말 내지 대비되는 말로 떠오를 수 있는 말이 타율, 간섭, 억압 등 일상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 학습’, ‘대입 자율화’ 등이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을 보면 자율이 무조건 누구에게나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자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한국어사전(HWP07 / 민중국어사전)의 정의.

율이란 말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자율이라는 말은, 많은 우리 현대 개념어가 그러하듯이, ‘autonomy’란 서구 언어에 대한 일본인의 번역어이다.²⁾ 그리고 이 말이 번역어란 사실은 이 말이 수입되기 이전 즉 20세기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익숙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을 이상시할 때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떠오르고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는 문제 상황은 가족 구성원들, 특히 부모에 의한 간섭과 구속이다. 그래서 간혹 자율의 궁극적 실현은 가출 내지 분가로 귀결된다고 연상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자율이란 말에 대해서 이른바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논란이 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율을 옹호해야만 할 가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자율의 개념을 폐기하거나 덜 중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논란이 되는 자율이란 일상적인 의미의 자율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여성주의와 관련되어 나왔고, 여성주의 중에서도 특히 배려 윤리(care ethics)와 관련해서 나왔다. 아니 배려 윤리 자체가 바로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 출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몇몇 논자들은 배려 윤리에도 자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덕 문제 해결에 자율 개념이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필자는 이 글에서 주로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I. 자유와 자율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처럼 자유주의는 정치권력의 정당화를 유럽 계몽주의의 사회계약론 전통으로부터 끌어내었다. 그리고 이 전통에서 정부의 권위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의 의지’에만 오로지 의존한다고 간주되었다.³⁾ 또한 많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자율의 이상을

2) 이 말은 일본에서 ‘자치’로 번역되기도 했다. [石塚正英, 『哲學思想翻譯語事典』, 論創社, 2003. p.130.]

3) John Christman, Joel Anderson, “Introduction”, John Christman and

자유주의 철학을 정당화하는 핵심으로 이해한다.⁴⁾ 이처럼 시민 개인 즉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자율의 이상은 자유주의 전통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자유는 많은 영역에서 쓰이는 매우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개인이 심리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상적으로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⁵⁾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자유는 그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규제함’이란 일상적인 의미를 지니는 자율은 ‘스스로’를 강조할 경우 타인이나 외부의 강제나 구속을 가능한 한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규제함’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경우 자기 스스로이지만 어느 정도는 행동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 나쁜 극단인 방종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두 개념의 관계는 약간 애매하다.

‘자율’(自律)이란 동아시아 말로 번역된 라틴어 ‘autonomia’는 그리스어 자기(auton)와 통치(nomos)라는 말의 복합어에서 유래한다. 역사적으로 이 말은 그리스 도시 국가의 독재권과 동의어인 ‘자치’ 즉 ‘자기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 말은 중세까지도 집단과 관련된 말이어서, 오래 동안 자치권 자결권이라는 정치적 법적 개념의 의미로 주로 쓰였다.⁶⁾ 그런데 자유란 말도 서구의 중세 신분제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귀족의 자유, 도시의 자유 등과 같은 ‘특권’을 의미했다. 즉 중세까지는 자유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신분이나 특정 지역 혹은 집단의 자유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상의 여

Joel Anderson eds., *Autonomy and the Challenges to lib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3-4.

4) Marilyn Friedman, *Autonomy, Gender, Politics*, Oxford U P, 2003. p.54.

5) 위의 한국어사전.

6) 大庭 健, 『現代倫理學事典』, 弘文堂, 2006. pp.450-451.

러 가지 특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관념이 점차 형성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자유 즉 개개인의 자유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서구에서도, 전통적인 봉건 신분제 사회가 붕괴되었던 절대 왕정기에 와서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유는 이제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로 점차 일반화되어 갔다.⁷⁾ 이러한 개인의 자유라는 이상의 지배는 통상적이라기 보다는 예외였으며, 이는 심지어 서구 근대사에서도 그랬다. 침해받지 않고자 하는, 혼자 내버려 두어지기를 바라는 욕망은,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고도의 문명의 발현이었다.⁸⁾ 이처럼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자율은 고대와 중세에는 낯선 근대적인 개념이다.

자유를 윤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만든 것은 스피노자(Spinoza;1632-1677)였지만⁹⁾ 자율을 윤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만든 것은 칸트(Kant;1724-1804)였다. 인과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과학의 세계를 보존하면서도 기계론적 유물론의 숙명론을 극복해 도덕의 근거를 확립하려고 했던 칸트는, 자유 개념의 전개 측면에서 보자면, 동시대인인 루소(Rousseau;1712-1778)와 흄(Hume;1711-1776)의 자유 개념을 일면 계승하고 일면 비판적으로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의 원리는 자유로운 존재의 ‘의지’ 속에 있다”¹⁰⁾고 보는 루소는 자유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는 속성이며,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보아 자유를 확실한 개인의 문제로 만들었다.¹¹⁾ 또한 “자유란 자기 자신을 위해 처방한 법에 대한 복종”이라는 루소의 유명한 언급은 칸트에게 자율 개념의 모델을 제공했다.¹²⁾ 반면 흄은 만약 자유가 외적 강제로부터의 자유라고

7) 『자유』, 『브리태니카세계대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카사, (1992)1994, 권18, p.512.

8) 베를린, 『자유의 두 가지 개념』, (안준홍 역, 법학연구, 제9권, 2003), p.136.

9) 매킨타이어, 『윤리의 역사, 도덕의 이론』, (김민철역, 철학과 현실사, 2004) p.258.

10) 프랑수아 풀리앙,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허경 역, 한울아카데미, 2004) 167쪽에서 재인용.

11) 『브리태니카세계대백과사전』, 위의 쪽.

12) Andrews Reath, ‘ethical autonomy’,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Routledge, 1998. vol. 1. p.587.

인식되고, 필연성이 무작위의 반대로 인식된다면, 인간의 자유와 자연의 필연성이란 생각 사이의 모순 즉 자유 의지의 문제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였다. 즉 흄에게 자유 의지란 외적 강제가 없는 것이지, 예측 가능성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칸트는 흄의 이러한 사고에 저항해서 자유는 외적 강제로부터의 자유 이상이라고 생각하였고, 선험적 반성을 통해 자율 개념을 도출하였다. 칸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동에 대해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데, 이를 정당화해 줄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 즉 도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묻고, 그 답으로 행위자가 그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된 도덕 원칙들 위에서 행할 때라고 한다.¹³⁾ 이렇게 ‘한 상태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능력’¹⁴⁾인 자유는 칸트에게 도덕 판단 즉 도덕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도덕의 근거인 자유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속성으로 전제¹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격적이라는 말과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말은 같은 말[비판;390]이다. 즉 인간이 인격적일 수 있으려면 즉 도덕이 가능하려면 의지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즉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진정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적 도덕 행위에서는 행위자가 자율적일 것이 요청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도덕 원칙 위에서 한 행동은 타율적이다.¹⁶⁾ 여기서 자신이 선택한다는 개념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간 순간의 선택 자체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한 원리 즉 법칙 위에서 행동한다는 말 즉 법칙에 복종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칸트에게 도덕 법칙이란 ‘인간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규범이며, 그것도 무조건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정언 명령’이기 때문이다.

13) Soren Holm, 'Autonomy',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1. Academic Press, 1998. p.268.

14) 칸트,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2)[이하에서는 ‘비판’으로 표기]. p.389.

15)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역, 아카넷, 2005)[이하에서는 ‘정초’로 표기]. p.181.

16) Holm, 위의 글, 위의 쪽.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 제정한 규율, 즉 자율’이었다. [비판; 388] 따라서 자율의 원리만이 도덕의 유일한 원리[정초; 169]이고, 의지의 자율이 모든 도덕 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비판;92]인 칸트에게 자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칸트에게 자율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법칙을 형성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요. 도덕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명령을 따른다는 것, 즉 복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가 스스로 제정한 명령을 따르는 것, 즉 자율적인 것이므로 가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신의 명령을 따르거나 자연적인 성향을 따르는 것 즉 자신의 이성에게서 유래하지 않은 것을 따르는 타율적인 것과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도덕적 권위를 가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결론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이다.¹⁷⁾ 그런데 정언 명령이, 그와 관련된 사건이나 필요성으로부터 분리되고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규율의 형식을 가지게 된다. 정언 명령으로 인해 개인은 도덕적인 주권을 가진 존재가 되고, 정언 명령을 통해 개인은 모든 외재적 권위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추구할 자유를 가지게 되지만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암시는 없다. 칸트가 말한 이른바 정언 명령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약속 준수나 거짓말 안하기 등의 원칙과 모순되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의 삶이라도 분명 도덕적으로 승인을 얻게 된다.¹⁸⁾ 이것은 ‘내용과 무관한 자유’라는 자유주의적으로 정당화된 자유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각이다. 즉 X를 행하는 자유는 X의 내용에 달려있지

17) 매킨타이어, 위의 책, 333쪽.

18) 매킨타이어, 위의 책, 336-337쪽. 그리고 매킨타이어의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칸트 해석[Paul Guyer, *Kant's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Continuum, 2007) 특히 98-102, 143-44 참조.]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가지 소중한 비판과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서 깨우쳐 주셨다.

않고, X가 그 행위자의 자율적인 선택인가, 즉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 생각이다.¹⁹⁾ 이런 점에서 칸트는 자유주의 이념의 선구자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이은 이후의 근대 서구 자유주의 도덕 철학, 즉 칸트 이후 도덕 철학과 교육 철학²⁰⁾ 특히 도덕 교육의 철학²¹⁾에서도 자율은 당연히 핵심가치로 인식되었다.

II. 여성주의와 자율

정당화될 수 없는 여성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자 양성간의 관계가 불평등한 종속 억압 관계라고 보는 이론인 여성주의(feminism)는 자유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이 된 자율을 추구함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성주의는 이론의 측면에서 그때까지의 서구 주류 철학이 가진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서구의 전통 철학이 여성들의 도덕적 능력을 폄하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이에 대한 비판이었다. 서구의 주류 철학 전통은 주로 여성을 자율성이 없는 타율적인 존재로 묘사하였다. 서구 주류 철학이 여성의 도덕적 능력을 경멸했을 때 여성주의 철학의 반응이 여성에게도 도덕적 자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여성주의 운동의 초창기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자율의 이상 자체는 문제

19) Joseph Chan, "Moral autonomy, civil liberties, and Confucianism", *Philosophy East and West*, vol.52,N3, 2002. p.300.

20) 햄(Hamm)은 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동은 '합리적인 자율적 능력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부모는 '합리적인 자율성으로 인도하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카츠 편, 『정의와 배려』, (윤현진 역, 인간사랑, 2007) p.215.]

21) 헤어(Hare)에 의하면 현대 도덕 교육 철학의 대부분은 "도덕적 원리의 전수"라든가 "젊은이로 하여금 적절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도덕 교육의 개념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현대 교육 철학은 도덕적 사고의 이해나 자율성의 개념에 기초한 도덕 교육의 개념들을 논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차잔 편, 『도덕 교육의 철학』, (이병승 역, 서광사, 2005) pp.183-184.]

시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개인의 자율은 억압에 저항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여성에게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졌다.²²⁾

그런데 1980년대부터 유사성보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서구 주류 도덕 철학의 전통 자체가 남성적이고, 그 전통은 인간을 상호 무관한 독립적 존재들로서 자율성을 유지하며 이성을 사용해 합리적으로 규율을 따르는 존재로 보는데, 이러한 인간 이해는 자본주의 시장 관계 즉 탐욕스럽고 갈등하는 이해관계 속에 있는 전문직 관리직 남성의 체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율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²³⁾

특히 이러한 반성에 계기를 마련한 것은 콜버그(L. Kohlberg)에 의해 만들어진 도덕성 발달 단계론이라는 영향력 있는 이론과 이에 대해 반발로 나온 그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길리간(C. Gilligan)의 이론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배려 윤리가 탄생하게 된 계기였다. 콜버그는 도덕성을 정의로, 도덕성 발달을 자율성으로의 진전으로 개념화한 피아제(J. Piaget)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콜버그는 피아제의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의 이분법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확대한다.²⁴⁾ 제1수준을 인습 이전 수준의 전 도덕적 단계로, 제2수준을 인습 수준의 타율 도덕성의 단계로, 제3수준을 인습 이후 수준의 자율 도덕성의 단계로 보는 콜버그의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단계론에서도 자율성은 도덕적 성숙의 지표가 되었다. 즉 콜버그는 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론의 가장 높은 단계로 자율성을 실현하는 개인의 도덕적 단계를 상정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강조되는 것은 한 행위자가 정의의 원리를 자신의 최고 원리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남성은 여성보다 한

22) Marilyn Friedman, "Feminism in Ethics: Conceptions of Autonomy", in Miranda Fricker & Jennifer Hornsby eds., *Feminism in Philosophy*, Cambridge U. P., 2000. pp.216-217.

23) 96.11.2. 이화 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의 초청으로 방한 강연한 앨리슨 재거의 강연 원고.[앨리슨 재거, 『21세기를 향한 페미니스트 윤리학』, [이상화 역, e 문서][http://dalara.jinbo.net/~dalara/home/jarou_alison.html]

24) 콜버그, 휴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문용린 역, 아카넷, 2000) p.195.

단계 더 높은 발달 단계를 보이고, 이 이론이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했다.²⁵⁾ 결국 콜버그는 칸트에서 롤즈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전통을 토대로 이론 구성을 한 것이다. 그런데 길리건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이 여성의 도덕 발달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려 윤리 이론을 전개한다. 즉 자신의 피험자였던 여성들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원리들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상황과 구체적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길리건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그들 자신이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고립과 포기를 두려워하는 반면 남성들은 자기 자신을 타자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고, 연결과 친밀성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도덕 판단에서도 여성들은 정의의 실현 같은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현존하는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조절하는 배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이처럼 1980년대에 들어서면 자율의 이상은,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도덕 사상과 정치 사상의 자유주의적 전통과 밀접한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전통은 사회적 관계와 상호 의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²⁷⁾ 더욱이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자율적 인간’이라는 계몽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이 일상생활의 필요를 관리해 주는, 부유한 이성애적 남성들뿐이라고 생각되었다.²⁸⁾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의식은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타자와의 연결이나 참여는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의 자아에 대한 감각을 몰래 손상한다고 믿게 하는, ‘전적으로 유해한 개념’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하였다.²⁹⁾

25) 콜버그, 『도덕 발달의 철학』, (김민남 외 역, 교육과학사, 2000) pp.54-67.

26) 재거, 위의 글.

27) Marilyn Friedman, 위의 글(2000), p.216.

28) Lorraine Code, ‘autonomy’, in Lorraine Code ed., *Encyclopedia of Feminist Theory*, Routledge, 2000. p.36.

29) Sarah Lucia Hoagland, *Lesbian Ethics*, 1988, pp.144-145, [Catriona Mackenzie, Natalie Stoljar,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

그러나 이러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주의자들은 아직도 자율성이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자율성에 ‘관계적’이라는 형용사를 첨가한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주의적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여성주의가 자율성을 배제해야 하는지 혹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른바 관계적 자율성이 가능한지 혹은 유의미한지 유용한지 등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성주의 자체도 단일한 것이 아니고, 관계적 자율성이란 개념도 그 아래 포섭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누구에게나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³⁰⁾

III. 배려와 자율

사실 대부분의 논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여성주의에도 자율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여성주의란 매우 다양한 전개를 보이고 있는 운동 내지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지칭이기에,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등이 자율성을 이상으로 한다든지, 자유주의가 실제의 삶의 작동 원리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사람들이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배려 윤리에도 자율성이 필수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다른 주장이다. 그것은 배려 윤리 자체의 발생이 바로 이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도덕적 성숙의 잣대로 쓰는 도덕윤리관에 대한 여성주의의 반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배려 윤리는 어떤 점에서는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 P., 2000. 52쪽에서 재인용.]

30) 네델스키가 처음 사용한 [Jennifer Nedelsky, “Reconceiving Autonomy: Sources, Thoughts and Possibilities”,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1(1989) pp.7-36.]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포괄적인 용어(umbrella term)이다.[Catriona Mackenzie, Natalie Stoljar,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 P., 2000. p.4].

거의 모든 문화에 과거로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의 한 가지 유형일 수 있고, 또 그 현대적 유형의 하나인 서구 여성주의자들의 배려 윤리도 이제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를 보이는 윤리로 발전했다.³¹⁾ 그러므로 배려 윤리가 여성주의에서 자각적으로 우리 시대에 논의되었다고 해도 배려 윤리가 여성주의하고만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배려 윤리 자체를 여성주의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즉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려 윤리에도 자율성이 필수적인지 하는 이 문제는 대체로 관심 밖의 문제이다. 그런데 여성주의에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배려 윤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이 문제 즉 ‘배려 윤리에도 자율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많지 않다.³²⁾ 명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람은, 필자가 알기로는, 안옥선과 허란주이다.

자유주의 윤리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탈감성적인 도덕 주체 설정’에 있다고³³⁾ 생각하는 안옥선은, 자유주의 윤리 이론에 대한 더 좋은 대안을 전반적으로는 불교에서 찾고 있지만, 배려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안은 기존의 배려 윤리도 윤리의 실천과 배려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자아의 자율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한다. 안이 해석한 길리간에 의하면 배려의 주체 즉 배려자는 ‘행동을 결정 짓는 원칙이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이행해간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는 상황의 인식, 행동의 선택,

31) 해밍튼에 의하면, 배려는 여성적 가치라는 초기의 용법을 넘어서서, 하나의 덕으로 혹은 정의(justice)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혹은 윤리 이론 이상의 어떤 것으로 혹은 몸의 습관 지식 상상력 등으로 쓰이고 있다, 즉 이미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Mauris Hamington, *Embodied Care*,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2004. pp.16-34].

32) 예를 들면 배려 윤리와 자율성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허라금은 여성주의 안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이 양립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배려 윤리와 자율성이 양립가능하다든지 배려 윤리에 자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허라금, 『여성주의적 ‘자율성’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11집. 1995. p.9].

33) 안옥선, 『불교 윤리의 현대적 이해』, 불교시대사, 2003 [이하에서는 ‘안’으로 표기]. p.199.

실천에 있어서 스스로의 주체적 이해와 판단에 따른다. 이는 노딩스의 배려 윤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아는 배려의 상황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판단에 따라 배려의 활용 여부를 의지적으로 결정한다. 배려를 실천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자아는 배려의 표출 방식을 선택하여 주체적으로 실천한다. 이와 같이 배려 윤리에 있어서 윤리 주체가 갖는 자율성은 상황의 인식과 판단, 행동의 선택, 그리고 선택된 행동의 표출 방식을 결정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래서 배려 윤리의 모든 과정은 윤리 주체의 자율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안;285-286]

안이 이 주장에서 사용하는 ‘주체적 인식과 판단’ ‘윤리 주체가 갖는 자율성’ 등의 표현에 반복적으로 보이는 주체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이다. 안은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 위에서 주체 내지 주체적이 아닌 것을 타자화로, 그리고 타자화를 타율화와 동일시한다. 때문에 안에게 주체적이란 표현은 자율적이란 말과 같게 된다. 그래서 안은 배려를 타율화와 어느 정도 동일시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³⁴⁾ 그런데 배려 윤리의 중요한 주창자 중의 한사람인 노딩스의 입장에서는 배려와 도덕 관계에서 우리 모두는 타자에게 의존한다.³⁵⁾ 그리고 배려의 방향은 늘 배려받는 자에서 배려하는 자에게로 이다. 다시 말해 배려받는 자 즉 타자가 우선이다.[Nod84;14] 이 때문에 배려는 타자화를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배려는 배려하는 자에 의해 전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조절되는 양식이다.³⁶⁾ 그러므로 타자에 영향을 받는 것을 타자화라고 한다면 배려 윤리가 타자화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타자화를 타율화라고 반드시 언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주체적이라는 말을 그대로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뿐이다. 물론 안은 모든 배려가 항상 필

34) 물론 안은 자신이 “모든 배려가 항상 필연적으로 타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있다.[안;348.주5]

35) Nel Noddings,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이하에서는 ‘Nod84’로 표기]. p.48.

36) Nel Noddings, *Starting at Home: Caring and Social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이하에서는 ‘Nod02’로 표기]. pp.13-14.

연적으로 타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지만, 즉 모든 타자화를 타율화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안에게 배려하는 많은 경우에 타율적으로 실천되며 또 타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안;348] 그러나 배려 윤리의 모든 과정에 자율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배려 윤리가 타율적이라면, 배려 윤리는 드물게만 제대로 배려를 하든지, 아니면 배려 윤리 자체가 타자화 즉 타율적인 윤리라는 말이다. 만약 배려 윤리 자체가 타율적 윤리라면 배려 윤리를 지지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안은 이와 관련하여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은 ‘궁극적으로 모든 도덕이 타인의 목소리에 충실하는 타자화된 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안; 350-351]라는 의문의 형식으로 이 문제를 애매하게 넘긴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자율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강한 주장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입장으로 후퇴한다. 그런데 이러한 애매성은 안의 자율 개념 자체에서 나오는 것 같다. 안은 결국 자율성을 ‘개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안;362] 즉 안이 자주 쓰는 ‘주체적’이란 다소 포괄적인 표현은 결국 ‘개인의 결정’이란 포괄적인 자율 개념 규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안과 같은 이러한 자율 개념 규정은 자율성 문제의 맥락을 벗어난 너무나 포괄적인 규정이다. 이러한 자율 개념이 과연 배려 윤리론자를 비롯한 여성주의자들이 문제시한 그 자율 개념인지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식적인 의미의 자율에 대해 논란을 벌여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안이 도덕의 문제를 아직도 주체와 비주체 즉 타자의 문제로 이원화해서 보는데서 생기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안은 자유주의 윤리의 문제도 ‘탈감성적인 도덕주체 설정의 문제’로 본다. 여기서 안은 ‘탈감성적’을 주목하지 ‘주체’ 설정을 주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체가 관계라는 개념에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배려 윤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은 진정한 자아 혹은 주체란 개념에 아직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즉 주체적 선택이란 말에 집착하기에 자율

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본 것처럼 대체로 안의 입장은 애매하고 유보적이다. 그래서 표면상의 주장과는 달리 배려 윤리에 자율성이 필수적이라는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하면 허란주의 입장은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다.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이루려는 여성주의 내의 다양한 노력에 있어서 자율성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³⁷⁾ 허는 일단 배려 윤리를 옹호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자율성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허99;41] 그렇지만 배려 윤리론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배려의 입장이 자율성을 배제한다는 오해[허99;32] 내지 자율성 개념의 애매성을 간과하여 생긴 오류[허99;44]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배려 윤리에 있어서도 결국 자율성이 필수적이어야 하고, 사실 기존의 배려 윤리도 자율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신이 밝히겠다고 선언한다.[허99;32] 허는 배려 윤리 옹호자들의 자율성에 대한 회의와 반론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길리간과 노딩스도 사실은 자율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그들의 글에서 전거를 들어 입증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점에서 허의 주장은 이중적이다.

허에 의하면 길리간은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닌데, 그 증거로 허는 길리간의 책³⁸⁾에서 “행위자 ‘자신이 선택’한 윤리”[Gilligan;90 / 허97;178], “배려는—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것” [Gilligan;74 / 허97;152], “책임의 윤리는 여성 ‘스스로 선택’한 [도덕적] 기반” [Gilligan;171 / 허97;300] 등의 3군데서 인용된 ‘스스로 선택’ 즉 자기 선택이란 말을 제시한다. 허는 위의 인용문들을 인용하면서 ‘선택’과 ‘원리’란 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길리간의 전체 글 중 단 3군데서 인용한 글들의 맥락 속에서 선택이라는 개념을 전혀 도출할 수 없는 것은

37) 허란주, 『페미니즘과 자율성』, [김해숙 외, 『여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9]이하에서는 ‘허99’로 표기]. p.32.

38) 원서[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2003 / 이하에서는 ‘Gilligan’으로 표기]로 174 쪽이고, 번역서[허란주 역, 길리간, 『다른 목소리로』, 동녘, 1997. / 이하에서는 ‘허97’로 표기]로 304쪽이 되는 길리간의 책.

아니지만, 그것들은 ‘원리의 선택’ 혹은 ‘선택된 원리’란 해석을 허용하는 표현은 아니고, 그 글들 속에서 강조된 것은 배려는 자율의 윤리가 아니고 책임의 윤리이고, 여성의 선택을 받은 윤리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앞 뒤 맥락을 통해 주장하는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나 행위를 숙고하거나 반성하거나 다시 고찰해야한다는 생각들이다.

또한 허는 노딩스도 자율성을 요청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보살핌의 윤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윤리 즉 보편적인 윤리로 정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윤리적 배려의 성향을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commitment)[Nod84;81]는 필수 불가결하며, 이러한 강한 의지는 행위자가 배려의 윤리를 스스로 선택했을 때에만 수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노딩스가 주장한다고 한다.[허99;45-46] 허는 노딩스를 간접 인용하면서 ‘의지’란 말과 ‘선택’이란 말을 드러내서 강조하고 있다. 앞서서도 본 것처럼 칸트에게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즉 칸트에게 그 자체로서 선한 것 본래적인 선의 가치를 가진 것은 선의지뿐이다. 그것은 옳은 행동을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항상 택하는 의지이다. 그리고 자유는 의지의 자율이고, 의지의 자율은 정언 명령의 원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행위 규칙의 근원이 되는 의지의 개념이 ‘의지의 자율’이다. 따라서 허의 이러한 주장은 칸트의 자율성 개념 즉 선택과 책임으로 구성되는 의지의 자율 개념을 암암리에 염두에 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가능성 중의 무엇인가를 택한다는 선택이란 말과 의지란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말이지만, commitment³⁹⁾와 선택은 그런 연관성이 없는 말이다. 배려는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고,[Nod84;42]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배려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배려함이 지적 차원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Nod02;13-14] 단지 배려자는 민감하고 수용적이고 책임지

39) 허는 commitment를 의지라고 번역하는데, 노딩스는 commitment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의지(will)라는 말을 쓰고 있다. [Nod84;103]

는 행위자가 된다.[Nod84;42]] 그리고 commitment는 의무와 관련이 있는 말이다. 그리고 노딩스에게 의무란, 즉 처음이자 마지막 끝없는 의무는, 타자를 배려하는 자로서 만난다는 것[Nod84;17]이지 관계성이란 추상적 원리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 오는 것[허99;46]은 아니다.

이처럼 허의 길리간과 노딩스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자의적이다. 그리고 노딩스의 경우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자율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⁴⁰⁾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해석의 문제는 역시 해석의 문제이고, 이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해석의 문제는 잠시 져쳐두고, 혹시 여성주의적인 배려 윤리의 창시자격인 길리간이나 노딩스 두 사람이 잘못 생각했고, 허의 주장이 타당할 수는 없는가, 즉 허가 제시한 구체적인 자율성 이론은 훌륭하게 배려 윤리에도 적합한 자율성 이론일 수는 없는가?

허는 콜버그류의 자율성을 배제하는 길리간이 앞의 3군데 인용문과 같은 이러한 자기 선택적 원리⁴¹⁾를 강조한다는 이 딜레마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를 묻고, 그것을 푸는 열쇠를 ‘자신이 부과한 원리에 복종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자율성을 해석하는 데서, 이 원리란 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석을 달리한 결과 이를 수 있는 다른 자율성 개념을 허는 이른바 ‘자기 결정성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이라고 부른다.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의무론적 해석이라고 보는 허는 칸트의 해석이 외부로부터 우연히 주어지는 모든 경험적 영향을 자율성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 보아, 이를 ‘우연성과 양립 불가능한 자율성론’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충족성, 독립성을 함축하는 자율성 개념으로 본다. 그런데 자율성의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원리를 반드시 칸트식으로 볼 필요가 없기에, 자기 결정성으로서의 자율성은 바로 길리간이 긍정할

40) ‘자율성’이라는 별도의 소제목 아래 서술하고 있다.[Nod02;pp.109-117]

41) 헬드는 배려 윤리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중 세 번째가 도덕적 문제에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들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Virginia Held, “The Ethics of Care” in the *The Oxford Handbook of Ethical Theory*, edited by David Copp,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538-542.]

것이라는 것이다.[허99;42-45] 그래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과연 자기 충족성 없는 자기 결정성 개념은 과연 유의미한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허는 자신이 옹호하는 이런 자율성을 칸트 식의 의무론적 자율성과 구분하기 위하여 ‘절차적’ 자율성이라고도 부른다.⁴²⁾ 이런 절차적 자율성이 허의 주장처럼 배려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의미 있는 자율성이라면 허의 주장은 유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허가 주장하는 절차적 자율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허에게 이런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은 ‘비판적 고찰’의 과정 또는 절차를 수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한 행위는 오로지 그것이 비판적 고찰의 과정을 따른 결과로서, 또는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행해진 한에서 자율적이라는 것이다.[허93;96-97]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비판적 고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면, 그것은 ‘만약 그 행위자가 “정보 확대의 요청”과 “계속적인 열린 마음의 요청”을 만족시켰다면 그 행위자는 절차적으로 자율적’[허93;107]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비판적 고찰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행위자 자신에 의해 선택된 것, 우연성이 최소화된 것이 과연 같은 말인가? 아니다.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훨씬 외연이 큰 말이다. 반성해서 신중하게 선택한다가 자율의 의미라면 그런 자율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허가 주장하는 핵심은 비판적 고찰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노딩스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 즉 반성이기도 하다.⁴³⁾ 이점에서 양자는 일치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노딩스는 자율이란 개념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허는 그래도 자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허가 자신의 자율성 개념에서 제시한 기준들은 노딩스가 제시하는 것처럼 반성이란 개념으로 충분한 것이다. 반성해서 신중하게 선택한다가 자율의 의미라면, 의지와 원리와 선택이 연관된 구조로 있는 사고의 표현물로서의 자율이 아니라면, 그런 자율은 철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것은 모든 행위가

42) 허란주, 『절차적 자율성: 우연성과 양립 가능한 자율론』, 철학40, 1993. [이하에서는 ‘허93’으로 표기]

43) reconsideration은 reflect 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는 선택이란 점에서 일상적 의미의 선택 그 자체가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허 자신이 제시한 자율성 개념의 원초적 의미인 ‘자신이 부과한 원리에 복종하는 것’에도 부합되지 않는 개념이다.

허가 제시했던 것은 우선 길리간과 노딩스의 글을 오독하지 않으면 그들도 자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주장과 그리고 배려 윤리의 배려가 필요로 하는 자율이란 칸트식의 의무론적 자율이 아니라 우연성과 양립가능한 자율인 절차적 자율성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우선 오독에 따른 오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둘째로 절차적 자율성이 배려 윤리에 과연 필요한가인데, 사실 절차적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개념은 그렇게 유의미한 것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도 충분하다. 즉 배려에 자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배려함에도 비판적 고찰 즉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신중하게 배려해야 한다든지 함부로 배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이기에, 특별히 자율이란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배려 윤리에도 자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배려 윤리의 자율성과의 관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허가 이런 과도한 주장을 하는가? 이러한 과도한 주장의 원인은 이미 노딩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결국 자아관에 있다.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일상적 의미의 자율성 즉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규제함’을 방어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에 있지 않다. 그 누구도 이러한 의미의 자율성을 배제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자아 형성에 우리가 통제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Nod02;110] 그런데 많은 현대의 철학자들도 의심하지만⁴⁴⁾ 노딩스도 ‘진정한 자아’라는 개념을 의심스러운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율성을 방어하고 싶은 철학자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Nod02;107]고 한다. 즉 진정한 자아란 개념을 전제한다면 ‘사회화에 굴복하지 않은 진정한

44)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마르크스주의 등 많은 현대 철학 사상들이 모두 서구 근대 철학의 주체 내지 진정한 자아 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자아'의 선택이란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즉 자율이라는 말은 자아 개념과의 연관 아래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아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자율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물론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율이 불가능하다든지, 자아가 설혹 있더라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기에 자율이 불가능하다든지, 자율이 가능해도 그것은 소수의 엘리트에게 한정된 것이라든지 등으로 비판하는 즉 보다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다.⁴⁵⁾ 그러나 노딩스는 비교적 온건하게 우리가 관계적 자아의 개념을 발전시킬수록 자율과 타율의 구별이 희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즉 노딩스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큰 덩어리는 타인과의 만남이고 우리는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배려의 관점에서 우리는 타인의 필요와 곤경에서 생긴 타인의 요구에 영향 받도록 스스로를 허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도덕적인 자율 개념이 의심스러운 것이다.[Nod02;112] 그리고 이런 점에서 교육철학자이기도 한 노딩스는 자유주의 교육의 커다란 딜레마는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되게' 강요해야 할 역설적인 필요를 느낀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Nod02;116-117] 그래서 자율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노딩스는 자율과 같은 개념이 자아와 관련하여 유용성이 있는지 의심한다. 그리고 자아와 관련해서는 반성이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Nod02;117] 이처럼 노딩스는 자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허는 자율성을 '자신이 부과한 원리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비록 허가 이 '자신'이라는 말에 칸트처럼 이성만을 고집하지는 않고 감성을 포함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라는 것에 집착한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와 같은 개념을 암암리에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와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된다. 바로 이점이 노딩스와 같은 사람의 배려 윤리를 오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안과 허가 노딩스와 길리간을 특히 노딩스를 오해하는

45) Marilyn Friedman, *Autonomy, Gender, Politics*, Oxford U. P., 2003. pp.30-47.

것은 그들에게 아직 ‘진정한 자아’ 혹은 주체라는 관념이 있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배려 윤리는 만남을 중심으로 하지, 주체와 타자의 분리를 전제로 주체가 타자에게 어떤 인과적인 행위를 자유로운 의지에서 해나간다는, 근대 자유주의 윤리 이론과 다르다는 것을 잠시 간과했는지도 모른다. 도덕 문제를, 어떤 사람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한 행위에 대해 그 사람의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것이란, 전제들 위에서 바라보는 한 주체와 타자의 분리는 필수적이고 여기서 자율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배려 윤리의 기본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딩스는 배려 윤리의 이러한 특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노딩스에 의하면, 만남이 발생하는 자아를 관계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우리는 습관적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성장하는 관계 속에 훌륭하게 참가하는데, 우선 사랑스럽고 정직한 어른이라는 타자들과의 끊임없는 만남이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반성이 자아 형성에 강력한 도구이고, 또한 교육이 그것을 고취할 것이다.[Nod02;107] 즉 노딩스에 의하면 자아 형성에 우리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회에 의해 주도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아 형성에는 타아가 끊임없이 관여 즉 간섭하는 것이지, 진정한 자아라든지 주체가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Nod02; 117] 그래서 이런 노딩스에게는 간섭과 배려는 멀지 않다. 결국 노딩스처럼 다른 자아관 위에 선다면 자율이란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배려에는 자율이 아니라 간섭 내지 관여가 필요하다.

IV. 맺는 말

이상의 검토 결과 필자의 결론은 적어도 배려 윤리에는 자율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려에 자율을 결합하거나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배려 윤리가 여성주의적인지’ 여부는 아직도 논란거리이지만, 그래서 배려 윤리가 여성주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려 윤리에도 자율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이란 말과 배려라는 말 양자 모두의 중요한 의미를 무화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그러면 과연 자율은 배려 윤리 이외에는 필수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물론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유 의지와 선택 그리고 책임이라는 서구 도덕 철학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율의 개념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것 즉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자율의 여러 가지 의미 중 집단의 ‘자치’라는 의미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의료 윤리에서 ‘환자들의 입장에서 자율권’ 문제 등도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개인의 도덕적 자율은 매우 근대적인 개념이고, 특정한 전제들 즉 서구 자유주의 문화 전제 위에서만 의미 있는 개념이다. 자신이 부과한 원리에 복종한다는 개념은 거칠게 상상해보는다면 바로 ‘유일한 절대자’로서의 기독교의 신 개념의 인간에 대한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서구의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율은 그 기본에서 서구 중세의 신 관념과 자유 의지의 문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자율이란 전적으로 근대 서구 자유주의 문화의 산물이고 이를 주조한 사람은 칸트이다. 그래서 칸트를 피한다는 것은 사실 자율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두 사람의 자율 개념도 사실 칸트를 피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그런 점에서 길리간이나 특히 노딩스의 입장은 일관된다. 노딩스는 신 즉 절대자나 다른 어떤 신성한 것에 의해 우리 인간이 타자화되지 않는다면 자율을 상정하지 않고도 인간의 도덕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Nod84:4]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피하면서도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자율성 개념이 등장했다. 도덕적 자율성으로 칸트의 개념을 한정하고 개인적 자율성을 주장한다든지, 개인적 자율성에서도 실질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을 구분한다든지, 급기야는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창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보완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모든 시도는 바로 코드(Code)가 언급하듯이 근대 서구 자유주의 문화의 자율 강박을 반영한 것이다.⁴⁶⁾ 그리고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완전히 다른 자율성은 그렇게 의미 있는, 꼭 그 개념을 사용해야만할 필연성과 필요성이 있는 개념이 아니다.

끝으로 필자는 자율성 개념 없이도 도덕의 기초를 세운 문화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모든 사람과 모든 문화가 자율성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래즈가 말했듯이 그것은 문화적 가치로서 특정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가치가 있다.⁴⁷⁾ 핑가레트(Fingaret)가 언급하듯 인간 존재의 중심적인 특징으로서의 선택이라는 관념은 오직 서로 밀접하게 짜여진 관념 체계의 한 요소일 뿐이다. 이런 선택 개념의 결여는 그러한 관념 체계의 나머지 다른 관념들도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주요한 관념들은 도덕적 책임, 죄책감, 응분의 징벌과 회개 등등이다.⁴⁸⁾ 선택과 책임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개념 체계의 결여는⁴⁹⁾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유가 사상 특히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그 중요한 예이다. 우리가 만약 도덕성을 ‘의도적 선택’이나 ‘의지에서 비롯되는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잠재력’이나 그것의 ‘실현’을 통해 인식⁵⁰⁾한다면 우리는 선택이나 의지를 중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녀 차별의 상황 속에서는 자율성이라는 이상이 어느 정도 억압받는 집단이 자신의 억압을 극복하고 투쟁하는데 수단으

46) Catriona Mackenzie, Natalie Stoljar,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 P., 2000. p.6.

47) J. Raz, *The Morality of Freedom*, Oxford U. P., 1986. p.189 n.1. [스테판 뮈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김해성 외 역, 한울, 2001) 420쪽에서 재인용.]

48) 허버트 핑가레트, 『공자의 철학』, (송영배 역, 서광사, 1993) p.52.

49) “공자가 생각하는 인간은, 실제의 선택항들 중에서 선택하여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에게 고유한 내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 때 문에 공자에게 있어 주된 도덕 문제는, 어떤 사람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해 선택한 행위에 대해 그 사람의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핑가레트, 위의 책. pp.65-66.]

50) 줄리앙, 위의 책. p.153.

로 실제 사용할 수 있고, 자율적 개인이라는 이념은 분명히 심리적 정치적으로 자유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⁵¹⁾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치워져야만 하는 사다리 구실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특히 도덕과 인간의 자아 문제를 생각할 때 자율성을 핵심 개념을 삼아야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배려를 중시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자아와 타아 즉 타자의 경계를 또렷이 하면 모든 관계는 간섭이요 구속이다. 바로 자율이 숨 쉬는 공간이다. 그런데 도덕에서는 외로운 자율이 아니라 건강한 의존[Nod02;129]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배려의 관점에서 우리는 타인의 필요와 곤경에서 생기는 타인의 요구에, 그리하여 간섭에, 영향 받도록 자신들을 허용해야만 한다. 즉 자율이 아니라 불가피한 간섭에 우리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투고일: 2008. 10. 27.
심사완료일: 2008. 11. 11.
게재확정일: 2008. 11. 14.

한평수
인하대학교

51) Marilyn Friedman, 위의 책(2003), p.54.

참고문헌

- 길리간,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역, 동녘, 1997).
- 매킨타이어, 『윤리의 역사 도덕의 이론』, (김민철 역, 철학과 현실사, 2004).
- 뮬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김해성 외 역, 한울, 2001).
- 베를린, 『자유의 두 가지 개념』, (안준홍 역, 법학연구, 제9권, 2003).
- 안옥선, 『불교 윤리의 현대적 이해』, 불교시대사, 2003.
- 재거, 『21세기를 향한 페미니스트 윤리학』, [이상화 역, e문서]
http://dalara.jinbo.net/~dalara/home/jarou_alison.html
- 줄리안,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허경 역, 한울아카데미, 2004).
- 차잔 편, 『도덕 교육의 철학』, (이병승 역, 서광사, 2005).
- 카츠 편, 『정의와 배려』, (윤현진 역, 인간사랑, 2007).
- 칸트,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2).
-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 콜버그, 『도덕 발달의 철학』, (김민남 외 역, 교육과학사, 2000).
- 콜버그, 휴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문용린 역, 아카넷, 2000).
- 핑가레트, 『공자의 철학』, (송영배 역, 서광사, 1993).
- 허라금, 『여성주의적 ‘자율성’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11집, 1995.
- 허란주, 『절차적 자율성: 우연성과 양립 가능한 자율론』, 철학, 40, 1993.
- 허란주, 『페미니즘과 자율성』, 1999. [김혜숙 외, 『여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9.]
- 『브리태니카세계대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카사, (1992) 1994.
- 大庭 健, 『現代倫理學事典』, 弘文堂, 2006.
- 石塚正英, 『哲學思想翻譯語事典』, 論創社, 2003.
- Andrews Reath, ethical autonomy,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Routledge, 1998.
- 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Harvard U. P., 1982, 2003.

- Catriona Mackenzie and Natalie Stoljar eds.,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 P., 2000.
- John Christman and Joel Anderson eds., *Autonomy and the Challenges to liberalism*, Cambridge U. P., 2005.
- Lorraine Code, 'autonomy', in Lorraine Code ed., *Encyclopedia of Feminist Theory*, Routledge, 2000.
- Joseph Chan, Moral autonomy, civil liberties, and Confucianism, *Philosophy East and West*, vol.52,N.3, 2002.
- Marilyn Friedman, *Autonomy, Gender, Politics*, Oxford U. P., 2003.
- Marilyn Friedman, "Feminism in Ethics: Conceptions of Autonomy", in Miranda Fricker and Jennifer Hornsby eds., *Feminism in Philosophy*, Cambridge U. P., 2000.
- Mauris Hamington, *Embodied Care*,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2004.
- Nel Noddings,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Nel Noddings, *Starting at Home: Caring and Social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Soren Holm, Autonomy,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cademic Press, 1998.

ABSTRACT

Care and Autonomy

Han, Pyoung-Soo

Autonomy usually implies a positive connotation, which was historically framed and developed in Western philosophical theories. Although it is often assumed that autonomy is a moral value to be respected, some claim that the concept of autonomy should be abandoned or discounted. This claim originates from a feminist approach, particularly in relation to care ethics. However, as other care ethicists also argue the requirement to respect autonomy,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that advocates the integration of autonomy into the ethics of caring.

Keywords: autonomy, freedom, feminism, care